

'2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



1 사업개요

- ✓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의 융자금 지원(고정금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
2 지원대상

- ✓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
- ✓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

지원제외 대상

- | | |
|---|--|
| ✓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| ✓ '26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결정 불가 |
| ✓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
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www.sims.go.kr)에서 지원합계 확인 | ✓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·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
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,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|

3 지원금액 및 절차

- ✓ 지원금액 :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15억원 한도, 공단 판단금액 전액 지원
- ✓ 지원절차

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✓ 기간 : '26년 1월~재원 소진 시까지(5,386억원)
- ✓ 방법 :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✓ 온라인 신청 매뉴얼

산업안전포털
(portal.kosha.or.kr)

지원사업 신청

산재예방시설자금
융자금 지원사업

자료실
문의 1544-3088

5 지원품목

- ✓ 위험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
- ✓ 기술사업(진단·점검·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
 - ➔ 고용노동부 점검·감독, 공단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,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·보수

6 필수사항

- ✓ 사업주교육 이수증 제출('23~'26년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(비대면포함), 위험성평가, 산재예방요율제 중 택1
- ✓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('25~'26년)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, 위험성평가 컨설팅, 민간기술지도 등



지원품목 확인하기